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가. <D-psicose 3-epimerase 등 6종 식품 첨가제 신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식품첨가제 신품목 관리방법>과 <식품첨가제 신품목 신고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품목 D-psicose 3-epimerase, 식품 영양강화제 신품목 Magnesium lactate, 사용범위를 확대한 식품첨가제 아스코르브산 팔미테이트(효소법),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확대한 비타민 B1 등 3종 식품 영양강화제에 대한 안전성과 공정 필요성은 전문가심사위원회 기술적 심사를 통과했음.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중이며 2023년 1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zqyj@cfsa.net.cn에 발송해 주시기 바람. 시간을 초과하면 무효로 처리됨.

붙임1 : <D-psicose 3-epimerase 등 6종 식품 첨가제의 관련 자료

자료원 : 중국국가식품안전평가센터(2022. 12. 08)

출처 : <https://www.cfsa.net.cn/Article/News.aspx?id=56B27CF83CDBF3F88D6A54679426F57C91D15C3A7A5C2C45>

나.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표시 지침>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 방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표시 지침>을 제정함.

붙임2 :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표시 지침>

자료원 :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2. 12. 20)

출처: https://gkml.samr.gov.cn/nsjg/tssps/202212/t20221228_352463.html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완화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2022년 제131호)
2023년 1월 8일로부터 모든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및 상온 수입물품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2022. 12. 28)

출처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761081/index.html>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2.11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1월	2008993100	김자반	48	텐진	요구사항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 증명서류 미제출	반송 또는 소각
	2008993100	김자반	48	텐진		
	2106909090	대두 인스턴스 파우더	172.8	텐진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2022.12.18)

출처 : <http://jckspj.customs.gov.cn/spj/xxfw39/fxyj47/4677516/4748234/index.html>

<붙임1> <D-psicose 3-epimerase 등 6종 식품 첨가제의 관련 자료

가. 의견수렴 중인 식품첨가제 신품목 명단

1.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품목

번호	효소	유래	기증자
1	D-psicose 3-epimerase	<i>Bacillus subtilis</i>	<i>Ruminococcus</i> sp. CAG55

* 식품공업용 효소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식품공업용 효소제>(GB1886.174)에 적용

2. 식품 영양강화제 신품목

(1) 중문 명칭: : 乳酸鎂

(2) 영문 명칭: Magnesium lactate

(3) 기능분류: 식품 영양강화제

(4) 용량 및 사용범위는 GB14880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중 마그네슘에 대한 규정 적용

3. 사용범위를 넓힌 식품첨가제

번호	명칭	기능	식품분류번호	식품명칭	사용 제한량 (g/kg)	비고
1	아스코르브산팔미테이트 (효소법)	항산화제	06.07	인스턴트 쌀가공품/면류	0.2	

4.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확대한 식품 영양강화제

번호	영양강화제	식품분류번호	식품명칭	사용량	비고
1	비타민 B1	14.04.02.01	특수용도음료(스포츠음료, 영양소 음료 등 포함)	2mg/kg~5mg/kg	
2	비타민 B2	14.04.02.01	특수용도음료(스포츠음료, 영양소 음료 등 포함)	2mg/kg~5mg/kg	
3	타우린	14.04.02.01	특수용도음료(스포츠음료, 영양소 음료 등 포함)	0.1g/kg~0.6g/kg	
4	아스코르브산팔 미테이트(효소법)	비타민 C의 화합물 유래로서 사용범위 및 따른다.	사용량은 GB14880의 규정에		

<붙임2>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표시 지침>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표시 지침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이하 “특수의료식품”이라 함) 기업의 표시 표준화 및 의사, 임상 영양사, 소비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특수의료식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방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1. 기본 요구 사항

특수의료식품 표시는 특수의료식품의 최소 판매 형태의 포장에 인쇄, 부착, 표시 또는 첨부하여 식품 기본 정보, 특성, 속성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문자, 기호, 숫자, 패턴 및 기타 설명의 총칭이다. 특수의료식품 표시에는 라벨과 설명서가 포함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식품안전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수의료식품 등록증의 내용이 언급된 경우 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특수의료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나 라벨이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벨, 설명서는 진실하고 표준화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하며 허위, 과장 또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특수의료식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는 특수의료식품 전용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2. 표시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1) 제품명

제품명은 상품명과 일반명으로 구성된다. 각 제품은 한 개 제품명만 있을 수 있으며, 승인완료된 특수의료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상품명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제품명은 표준화된 한자(<일반규범한자표>의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번체한자, 숫자, 자모(?제외), 그래픽, 기호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수입 제품은 영어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중문과 일치해야 한다. 제품명 글꼴 색상은 라벨 배경 색상과 구별해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품명 글꼴 크기는 일반명보다 작아야 하며 글꼴과 색상은 일반명보다 두드러지지 않아야 한다. 글자 하나의 면적으로는 상품명 글꼴의 총면적(사각형 계산 방법 기준)은 일반명이 사용되는 글꼴의 총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면 안 된다. 상품명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상품명 이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총면적(사각형 계산 방법 기준)은 일반명이 사용되는 글꼴 면적의 4분의 1 이하, 상품명 면적보다 작아야 하며, 제품명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상표 글꼴 크기는 상품명 글꼴 크기보다 크면 안 된다.

일반명은 눈에 띄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표기하면 안 되나 지면 제한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감독총국이 특수의료용 조제 제품의 일반명 조정에 대한 공고> (2019년 제26호)에서 조정된 일반명을 참고한다.

(2) 제품 카테고리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일반원칙>(GB29922)(이하 GB29922라고 함) 및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 유아용 조제식품 일반원칙(GB25596)(이하 GB25596이라고 함)에 규정된 제품 카테고리(분류)에 따라 표시한다.

(3) 성분표

성분표의 각종 성분의 명칭은 해당 표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체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는 경우 “고체 옥수수 시럽” 또는 “전분 설탕(고체 옥수수 시럽)”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특정 원료가 2종 또는 2종 이상의 다른 원료로 구성된 복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제외)인 경우 성분표에서 복합원료의 명칭을 표시한 후 첨가량의 내림차순으로 복합원료의 원래 원료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첨가량이 제품 총량의 25% 미만인 복합원료에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에 규정된 반입원칙에 부합하고 최종제품에 공정작용이 없는 경우는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복합원료 중 최종제품에 공정작용을 하는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 배합에 첨가량이 2%를 초과하지 않는 성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선택적 성분, 기타 성분(루테인 등), 식품첨가제, 기타 성분(식용가능균종 등)의 순서로 표시하며, 그 중 비타민, 미네랄 등은 영양성분표의 순서로 배열한다.

(4) 영양성분표

영양성분표는 사각표의 형태로 100g/100mL당, 100kJ당 제품의 에너지(kJ), 영양소 및 선택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100kcal 제품의 양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비 액체 제품이 100mL당 표준 제조액의 에너지(kJ), 영양소 및 선택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각 제품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때 각 제품의 에너지(kJ), 영양소 및 선택

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100g/100mL 및 100kJ당 제품의 에너지, 영양소 및 선택적 성분 함량의 수치는 상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각표는 임의 크기일 수 있으며 포장 기준선에 수직으로 “영양성분표”를 제목으로 한다.

에너지, 영양소 및 선택적 성분은 GB29922, GB25596 등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계량 단위를 사용하며 표시된 수치는 제품 테스트 또는 원료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영양성분표의 수정 간격은 해당 식품안전국가표준에 해당하는 소수 자릿수 이상이어야 하며 GB 25596의 영양소 비율에 대한 요구사항(리놀산과 α -리놀렌산 비율, 칼슘과 인 비율 등)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시한다.

(5) 배합 특성/영양학적 특성

제품 배합 특성 및 영양 특성에 대한 설명은 제품 배합 특성, 공정 특성, 영양학적 특성 등과 결합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적용 대상자의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표준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합의 특성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GB25596은 사전 젤라틴화된 전분만 특수 의료용 유아용 조제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과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배합 특성/영양학적 특성에 “감자 전분 사전 젤라틴화 처리” 또는 “과당 미사용”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6) 임상시험

특정 완전 영양 조제식품의 라벨 및 설명서는 임상시험의 연구목적, 임상시험설계, 관찰인군, 시험인원수, 관찰주기, 대조대상, 주요/부차 관찰지표,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7) 조직 상태

설명은 분말, 액체 등과 같은 제품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8) 적용 대상자

GB 29922, GB 25596의 규정 및 제품 개발의 적용 대상자 및 특수 의료 상태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적용 대상의 연령대 및(또는) 특수 의료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9) 섭취방법 및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량은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적용 대상의 연령, 체중, 의학적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하여

야 한다. 제품의 특성과 적용 대상에 따라 조제량, 조제방식, 섭취경로(예: 경구 또는 위관영양)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이 유지되는 온도, 복용속도, 조제 후 보관방법 등을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10) 순함량 및 규격

사전 정량한 포장 식품은 순함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동일한 사전 포장 안에 여러 개 사전 정량 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순함량을 표시하는 동시에 규격을 표시해야 한다.

(11)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은 년, 월, 일 순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날짜 표시가 “포장의 특정 부분 참조”로 하는 경우, 특정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날짜 표시는 포장 및 용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적으로 첨부, 인쇄 또는 변조되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은 “XXXX년 XX월 XX일까지”, “XXX년 XX월 XX일 전에 섭취(음용)하십시오”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2) 보관조건

온도 및 습도 요구, 서늘한 곳에서의 보관, 상온 보관 등과 같은 제품의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봉 후 보관 조건을 표시한다. 개봉 후 제품을 보관하기 어렵거나 원래 포장 용기에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별도 표시해야 한다. 특별한 보관 요구사항이 있는 제품은 특별히 표시되어야 한다.

(13) 경고 및 주의사항

눈에 띄는 곳에서 “请在医生或临床营养师指导下使用(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 하에 섭취)”, “不适用于非目标人群使用(목표 대상자 아닐 경우 사용 불가)”, “本品禁止用于场外营养支持和静脉注射(이 제품은 장외 영양지원 및 정맥주사 금지)”, “配制不当和使用不当可能引起XX危害(부적절한 사용으로 XX 위험을 유발 가능)”, “严禁XX人群使用或XX疾病状态下人群使用(XX환자 사용 또는 XX 질병 상태하 사용 금지)” 등 경고 및 “产品使用后引起不耐受(不适)(제품 사용 후 불내성(불편함) 초래 가능)”, “XX人群使用可能引起健康危害(XX환자 사용하면 건강 위험을 유발 가능)”, “可作为单一营养来源单独食用(단일 영양원으로 단독 섭취 가능)” 또는 “不可作为单一营养来源(단일 영양원으로 사용 불가)”, “使用期间应避免细菌污染(사용기간 세균 오염을 피해야 한다)”, “管饲系统应当正确使用(위관영양에 올바른 사용 필수)”, “包装不能用于微波加热(전자레인지 가열 불가)”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警示说明和注意事项(경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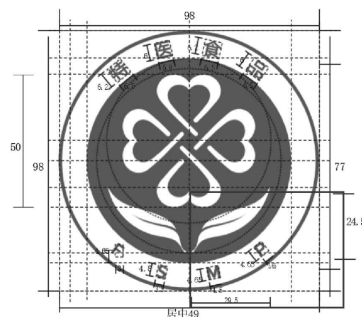
주의사항)”이란 제목을 굵게 표시되어야 하며 글꼴은 라벨의 주요 전시면 내용 외 기타 내용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 메인 전시면 요구사항

특수의료식품 라벨의 주요 전시면에는 제품명, 특수의료식품 마크, 순함량(규격), 등록번호, 적용 대상자,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이란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맛(바닐라맛 등),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 그래픽을 표시 가능하다, 메인 전시면 모서리 부분에 등록된 상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표시하면 안 된다.

특수의료식품의 라벨은 판매 포장 라벨의 메인 전시면의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구역에 설정해야 하며, 메인 전시면의 방향은 문자 방향과 일치하다. 메인 전시면의 표면적이 100cm^2 보다 크면 마크 직경이 2cm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이 100cm^2 보다 작으면 마크 직경이 1cm 이상이어야 하다. 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경우, 마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의료식품 마크는 눈에 띄게 명확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하며 양식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변화될 수 있으나 변형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특수의료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은 특수의료식품 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 비율 및 마크 샘플은 다음과 같다.



특수의료식품 마크의 전체 비율은 98:98(높이:넓이), 기본 패턴 부분은 77:77(높이:넓이)이다. 꽃 모양 패턴의 비율은 50:50(높이:너비)이며, 중심 위치는 직경 62의 정원형 가운데에 있다. 잎 패턴의 비율은 24.5:61(높이:넓이), 두 잎 사이의 거리는 2이고 잎 위치는 기본 패턴의 직경이 69.5의 동심원의 밑과 맞추고 호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며 높이는 기본 패턴의 황금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단일 글씨 비율: “특”의 높이 6.2, 너비 6.5, “의”의 높이 6, 너비 5.8, “식”의 높이 6.2, 너비 6.5, “품”의 높이

6, 너비 6.5, “F”의 높이 4.65, 너비 3, “S”의 높이 4.8, 너비 3.5, “M”의 높이 4.65, 너비 4.5, “P”의 높이 4.65, 너비 3.65이다.

인쇄 표준 색상 CMYK 색상 값: 파란색은 C100 M0 Y0 K0이고 화면 표준 색상 RGB 색상 값: 파란색은 R0 G160 B233이다.

4. 금지사항

라벨 및 설명서에는 표시 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特效(특수효과)”, “全效(올인원)” 등과 같은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 위반 또는 절대화 단어 금지
- (2) “(预防)예방”, “(治疗)치료”, “(速康)신속 회복”, “(优术)우수한 의술” 등과 같은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단어 금지
- (3) “强壮(강건)” 등 건강기능과 관련된 단어 금지. 지능 개발, 저항력 또는 면역력 강화, 장보호 등 기능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 금지
- (4) “神效(신효)”와 같은 저속하거나 봉건 미신적인 단어 금지
- (5)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음이나 모양이 비슷한 단어 또는 “친체(亲体)”, “母爱(모성애)”, “仿生(생체모방)” 등과 같은 단어 금지
- (6) 유아 또는 환자의 이미지를 라벨 패턴으로 사용 금지 및 “人乳化(인유화)”, “母乳化(모유화)” 등 유사한 단어 금지
- (7) 기타 법률, 규정, 규칙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지

5. 기타 요구사항

- (1) 특수의료식품의 라벨 및 설명서에는 법률, 규정, 규칙,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등록규정에 언급된 기타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 (2)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같은 특수의료식품의 경우, 라벨의 내용(함량과 규격, 맛 제외), 양식 및 색상이 일치해야 한다.
- (3) 라벨 및 설명서에는 제품의 영양소에 대한 기능성 강조 표시해서는 안 된다.
- (4) 특수의료식품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0cm^2 미만 혹은 제품이 100g 또는 100mL 미만인 경우, 섭취안내 도해(图解)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5) 특수의료용 조산/저체중 영아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영아영양보충제, 특수의료용 단백질(아미노산) 성분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탄수화물 성분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전해질 조제식품, 특정 완전 영양 조제식품 등의 제품은 제품 라벨, 설명서

[경고 및 주의사항] 부분에 제품의 섭취상태 또는 기타 적절한 상태의 삼투압을 표시하여야 하며, “본 제품(표준 조제액)의 삼투압은 약 XXX임에 참고하십시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하여야 한다.

- (6) 특수의료용 조산/저체중 영아용 조제식품은 또한 “对于0~6月龄的婴儿最理想的食物是母乳，早产/低出生体重婴儿应在医生或临床营养师指导下，在母乳不足或无母乳时食用本品(0~6개월 영아의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이며, 조산/저체중 영아는 모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본 제품 섭취)”, “根据不同早产/低出生体重婴儿情况，当生长发育各项指标达到相应矫正月龄婴儿的正常范围时，可在医生或临床营养师指导下转为普通婴儿配方食品或配合添加辅助食品(조산/저체중 영아 상황에 따라 성장발달 지표가 해당 교정월령 영아의 정상범위에 이르면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일반 영아용 조제 식품 혹은 추가 보조식품으로 전환 가능)” 등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7) 생후 6개월 이상 영아가 섭취할 수 있는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에는 “6月龄以上特殊医学状况婴儿食用本品时，应配合添加辅助食品(6개월 이상 특수의료상태의 영아가 이 제품을 섭취할 때 보조식품과 함께 섭취하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 (8) 특수의료용 탄수화물 성분 조제식품은 “临床使用中应注意检测血糖(임상 사용 시 혈당을 모니터링하십시오)”와 같은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9) 특수의료용 전해질 조제식품은 “临床使用中应注意检测产品中涉及元素的血清离子浓度(임상 사용 시 제품의 해당 원소의 혈청 이온 농도를 모니터링하십시오)”와 같은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10) 수입 특수의료용 영아용 조제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입국 전에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해야 한다.